

『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재우 의원 외 15명

2. 제안이유

-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확대추진으로 명품 교육도시 실현과 시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규정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- 교복구입비의 지원 및 지원금액(안 제4조~제5조)
-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(안 제6조~제7조)
- 환수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, 「교육기본법」 제4조, 제27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19. 6. 26. ~ 7. 2.) 결과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 조례안은

-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한 명품교육도시를 실현하고 시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복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3조에서 교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,
- 안 제4조에서 교복구입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,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, 안 제8조에서는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검토 결과,

- 학생들의 복지증진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교육여건 격차 최소화에 기여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여 행복한 교육도시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, 현재 도내 4개 시·군(포항, 김천, 청송, 울릉)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인 것으로 파악됨.
- 사전에 집행부와 협의를 거쳤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,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형식과 내용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
- 다만, 본 조례 시행 시 매년 약 29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소요예산 전부를 자체 부담해야 하므로 유관기관과의 협력·합의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한 재정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우리시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,
-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교복구입비의 지원 확대에 따라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26조제2항에 의거,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